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협력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정책 공유와 의회 간 교류는 일회성 방문을 넘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의원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재외동포 출신으로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정책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초청외교활동 대상인 ‘외국인사’의 범위에 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청외교활동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 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의원외교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원외교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서울의 정책 역량과 도시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통로입니다. 제도가 정비 될 때 교류의 성과 또한 더욱 체계적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